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시 합참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각 군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0023호 및 법률 제20190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등 마련
나.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소요결정하는 절차 등 마련
다. 시험평가 결과 판정 항목 중에 '조건부 적합' 항목 추가
라. 법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추가 반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범죄경력조회 요청)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동참모의장”을 “소요결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적합 또는”을 “적합, 조건부 적합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6항”을 “법 제21조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3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2.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제재기간
1. ~ 5. 생략	
6. 법 제5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년
나.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	4년
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년
라.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	3년
마.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바.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2년6개월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제1항, 제11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1년6개월
아.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1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	5년

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자.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	5년
차. 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년
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이 동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요한 경우	3년
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	2년6개월
파. 아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미수범에 해당하거나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2년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	------	------	---------

신청인 (대표자)	업체(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국적*	
	주 소			
	법인명/직위	/		

「방위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의 참가(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	------------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조회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합동참모의장</u>에게 해당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 7. (생 략)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u>제3조의2(범죄경력조회 요청) 영</u> <u>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u> 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u> 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 ----- ----- <u>소요결정</u> <u>기관의 장</u>----- ----- ----- ---. 1. ~ 7.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 -----

구분하여 판정한다.

1. (생략)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⑤ (생략)

<신설>

제28조(주요 방산물자) ①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적합,
조건부 적합 또는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1조제7항-----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주요 방산물자)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7조의2(지체상금률) ① (생략)	제37조의2(지체상금률) (현행 제1항과 같음)
----------------------	----------------------------